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구 미 시

#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된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는 위탁을 통해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나. 추진근거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의5
- 4) 「지방공기업법」 제1조 ~ 제2조
- 5) 「지방자치법」 제117조
- 6)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 7)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 제22조의2

다. 위탁사무 :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의 관리 운영

라. 시설개요

- 1) 시설명 : 들성생활체육센터
- 2) 소재지 :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78
- 3)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73m<sup>2</sup>
- 4) 층별시설

층 별	면적(m <sup>2</sup> )	주 요 시 설	비 고
지하 1층	532.7	전기실, 기계실, 감시실	
지상 1층	1,708.95	수영장(25mX6Lane), 사무실 등	주차79면
지상 2층	687.06	다목적실, 어린이놀이방 등	
지상 3층	1,643.86	헬스장, GX실, 다목적체육관 등	

마.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구미시설공단)

사. 소요예산 : 1,927,225천원(2024년)

(단위: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세입	-	572,753	572,753	572,753	572,753	2,291,012
	소계(a)	-	572,753	572,753	572,753	572,753	2,291,012
세출	노무비	1,025,070	1,055,822	1,087,497	1,120,122	1,153,725	5,442,236
	경비	627,782	646,615	666,014	685,994	706,574	3,332,979
	일반관리비	99,171	102,146	105,211	108,367	111,618	526,513
	부가세	175,202	180,458	185,872	191,448	197,192	930,173
	소계(b)	1,927,225	1,985,042	2,044,593	2,105,931	2,169,109	10,231,900
합계(a-b)		△1,927,225	△1,412,289	△1,471,840	△1,533,178	△1,596,356	△7,940,888

※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방안 연구용역 산출 결과('23. 3.)

※ 물가반영률 연 3%적용

### 3. 부서의견

- 체육시설이 설치된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종목별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이며 또한 그 외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이며
- 또한,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공공복리와 편익증진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위탁함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구미시설공단은 현재 구미시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등의 시설을 수탁 운영 중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체육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 이러한 운영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도 구미시설공단 위탁 운영 시 체육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 촉진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4. 참고사항

- 사진대지
- 위탁비용 산출내역
- 관계법령

# 들성생활체육센터 사진대지

## □ 위치도



## □ 조감도



## 위탁비용 산출내역

(단위 : 천원/년)

구 분		들성생활체육센터	비 고
인 건 비	직 접 인 건 비	1,025,070	
	소 계	1,025,070	
경 비	보 험 료	106,010	
	복 리 후 생 비	11,169	
	수 도 광 열 비	70,566	
	전 력 비	144,441	
	연 료 비	162,000	
	수 리 수 선 비	86,012	
	소 모 품 비	30,003	
	지 급 수 수 료	17,582	
	소 계	627,782	
순 운 영 비		1,652,852	
일 반 관 리 비		99,171	순운영비의 6%
운 영 비 합 계		1,752,023	
부 가 가 치 세		175,202	운영비의 10%
연 간 위 탁 비 용		1,927,225	운영비 + 부가세

※ 2023년 운영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수입은 2022년 이용인원 기준으로 산정

※ 코로나-19이전 이용인원 기준 수지비율은 66.1%(올림픽기념생활관)

## 관계법령

###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제19조의3(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

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

2.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관리위탁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그 관리위탁과 같은 종류의 수탁 실적

3. 제1항제3호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

제19조의4(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지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은 구미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장은 전문적 관리와 운영·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관련 비영리 단체나 구미시설공단(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5에 의거하여 수탁관리자의 관리 및 운영 능력, 수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④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체육센터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

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미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수행 실적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6.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7.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소 관 부 서		체육시설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민 영 미
	담 당	김 래 연
	담 당 자	김 나 은 (480-4914)